

# 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숭의여자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숭의여자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10(예장동)에 둔다.

제5조(설치계열,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계열,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입학정원		
	계열/학과/전공	학제	주간	야간
유아교육과		3	80	72
문화정보과		2	80	40
경영과		2	80	80
관광과		2	90	80
비서행정과		2	40	40
가족복지과		2	80	40
식품영양과		3	64	64
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2	40	80
	쥬얼리디자인전공	2	40	40
	시각디자인전공	2	80	40
	아동미술디자인전공	2	40	40
미디어영상계열	음악컨텐츠전공	2	40	40
	미디어문예창작전공	2	40	40
	댄스&스포츠전공	2	40	-
	디지털미디어전공	2	40	40
	영상컨텐츠전공	2	40	40
계		914	776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학기) 매 학년도 학기는 2학기로 하되, 학사력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10월31일)
- ②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과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시에 총장이 따로 공고하는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1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매학년도 학교협의체에서 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총장, 교목실장, 처장, 전산지원센터장,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포함)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재입학은 해당과(전공)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9조(입학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이 정한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2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편입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학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폐교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이 40학점 이상인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40학점 이상인 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40학점 이상인 자
- ② 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③ 징계제적된 자(다른 대학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유사과(전공)로 입학할 수 있고,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학제가 변경된 과(전공) 출신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그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제23조(전과) ① 전과는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전학년에서 이수한 전과목의 성적이 B급 이상인 자로서 전입과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총장이 정한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타과에 전과할 수 없다.

⑤ 2,3학년 학제가 상호 다르거나 연계교육과정 입학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제2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한 기일내에 지정서류에 의거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년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자퇴) ①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망, 실종 등의 경우는 보호자의 신고로 자퇴처리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8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한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해 제적처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15%, 전문교과 85%~90%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점 배점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반드시 대학령의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3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전공교육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상호 연계운영의 대상은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로 하며, 연계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제과는 80학점 이상, 3년제 과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공,교양교과는 학과에서 개설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열내 전공은 특성에 따라 각 전공간 전공교과의 교차수강을 일정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재학중 본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에 의해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 및 해외연수로 취득한 학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수업 및 교수시간)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 수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7: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개시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안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총장의 허가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의 수강신청은 장애유형에 따라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수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6조(출석) ①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학생 가정의 상고 및 학생의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 실기시험 등을 병용 하되 그 실시(중간, 기말, 수시시험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의 총수업 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과목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의 시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9 단계 평점방법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 이하	0
P		불계

-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성적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제40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학사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졸업 및 수료) ①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④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는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장 평생교육

제43조(비정규특별과정)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4조(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의거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와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기타 비학위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시간제등록제)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모집인원은 통합반 및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 ③ 경규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반을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단, 교원양성학과는 모집단위에서 제외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통합반 및 별도반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내의 교과목으로 운영하며, 취득학점은 학 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삭제

- ⑧ 학점은행센터의 표준교육과정에 없는 전공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학의 단일 전공에서 만 80학점(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이수포함)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⑨ 별도반은 주말 또는 특정기간을 활용하여 4주이상의 집중수업을 할 수 있다.
- ⑩ 기타 시간제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별지 제3호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3년제는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 총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우리대학에서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3년제는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경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장 학생활동

제47조(총학생회 조직) ① 본 대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송의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제5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 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 전반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을 통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처벌) ①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53조(규율) 학생은 학칙과 각종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 성의로 학업에 임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기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교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교무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56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장 등록금

제5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총장이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3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대로 반환한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송사유 발생일	반송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송하지 아니함

- ⑤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⑥ 등록금은 결석·징계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8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장 장학금

제59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시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2. 재학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생활이 극빈한 자
3. 재학시 대학생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②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60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1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2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처장, 전산지원센터장,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제위원회) ①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문현정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심의위원회, 복지위원회, 대학정보화위원회, 전산운영위원회,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교원자격심사위원회, 학술연구심의위원회,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취업지도위원회,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장 직 제

제64조(교직원) 본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제65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부총장, 교목실, 대외협력실,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각 실처에는 실처장을 보하고 각 실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 실처 및 기타 부서의 사무분장을 따로 정한다.

## 제1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기관

제66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학술정보센터
  2. 신문방송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전산지원센터
-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7조(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1. 유아교육연구소
  2. 중소기업경영연구소
- ②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8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유치원
  3. 뉴미디어디자인센터
-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의 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6장 학칙 개정 절차

제69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심의 및 공포) 공고(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개정안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71조(보고) (삭제)

제71조의 2(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장 보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숭의여자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83학년도에 한한다.  
③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4조 제3항 및 제 24조 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및 제 10조 제 1항 제 1호의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자격고사에 합격할 때에는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할 때에는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 제 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인전공으로 하고 학위명은 패션디자인전공을 패션디자인전문학사, 그 외 전공은 디자인전문학사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중 이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에서 인용된 종전의 학칙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제6조(모집단위신설) 정보통신계열에 차세대통신S/W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을 신설하고 학위명을 공업전문학사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영관리계열에 경영과를 경영전공, 관광과를 관광전공, 비서행정과를 비서행정전공으로 명칭변경하여 계열화 한다.
- ③ 정보통신계열에 인터넷정보과를 인터넷정보전공으로 명칭변경하여 계열화 한다.
- ④ 일러스트레이션전공을 일러스트레이션&카툰전공으로 명칭변경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4.11.4 삭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및 전문학사명 변경에 관한 사항)

경영전공, 관광전공, 비서행정전공, 인터넷정보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은 전공을 과로 차세대통신S/W전공은 모바일S/W과로 문화상품디자인전공은 금속장식디자인전공으로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시각디자인전공으로 문예창작과는 미디어문예창작과로 관광레저스포츠과는 레저스포츠과로 변경하고 전문학사명은 명칭 변경전의 전문학사명을 사용하되, 미디어문예창작과는 미디어문예창작전문학사로 한다.

제3조(일러스트레이션&카툰전공, 웹디자인전공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04학년도 이전에 일러스트레이션&카툰전공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디자인계열의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웹디자인전공은 멀티미디어컨텐츠과나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선택하여 수강한다.
- ③ 일러스트레이션&카툰전공자는 시각디자인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웹디자인전공자는 멀티미디어컨텐츠과와 시각디자인전공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과목을 이수한다.

제4조(모집단위신설) 디자인계열에 아동미술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학위명은 미술전문학사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신문사, 방송국, 교지출판실을 신문방송국으로 통합하고 지역정보교육센터는 평생교육원에 통합하여 2006.1.1. 일부터 개편조직을 운영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멀티미디어컨텐츠과, 모바일S/W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05학년도 이전에 멀티미디어컨텐츠과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컴퓨터게임과에, 모바일S/W과는 인터넷정보과에서 수강한다.
- ③ 멀티미디어컨텐츠과는 컴퓨터게임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모바일S/W는 인터넷정보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과목을 이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유실용디자인전공, 금속장식디자인전공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06학년도 이전에 섬유실용디자인전공, 금속장식디자인전공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텍스타일&메탈디자인전공에 복학하며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도 텍스타일&메탈디자인전공에서 한다.

제3조(모집단위신설) 디자인계열에 텍스타일&메탈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학위명을 디자인전문학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용과, 레저스포츠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07학년도 이전에 무용과, 레저스포츠과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무용&레저스포츠과에 복학하며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도 무용&레저스포츠과에서 한다.

제3조(모집단위신설) 무용&레저스포츠과를 신설하고 학위명을 무용&레저스포츠전문학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게임과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 명칭은 입학당시 과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0학년도 이전에 컴퓨터게임과에 입학하여 휴학한 자 또는 유급한 자는 인터넷정보과에 학적을 두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해당학과 및 인터넷정보과, 시각디자인전공, 미디어문예창작과 등에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및 전문학사명 변경에 관한 사항)

텍스타일&메탈디자인전공은 쥬얼리디자인전공, 음악과는 음악컨텐츠전공, 미디어문예창작과를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인터넷정보과를 디지털미디어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전문학사명은 명칭 변경전의 전문학사명을 사용한다. 무용&레저스포츠과는 댄스&스포츠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전문학사명은 댄스&스포츠전문학사로 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의 과(전공) 명칭은 입학당시 과(전공) 명칭을 사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2011학년도 이전에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명칭변경한 과(전공)에 복학하고 이에 따른 수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이수는 명칭변경한 과(전공)에서 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 변경 등으로 수강이 곤란한 경우 타과(전공)에서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할 수 있다.

제4조(모집단위신설)영상미디어계열에 영상컨텐츠전공을 신설하고 학위명을 영상전문학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각과별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계열/학과/전공	학위명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문화정보과	문화정보관리전문학사
경영과	경영전문학사
관광과	관광전문학사
비서행정과	비서행정전문학사
가족복지과	복지전문학사
식품영양과	보건전문학사
디자인	패션디자인전공
계열	쥬얼리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아동미술디자인전공
미디어	음악컨텐츠전공
영상계열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댄스&스포츠전공
	디지털미디어전공
	영상컨텐츠전공

[별표 2]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수여 학위명

학과	학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유아교육학과	1년	-	40	문학사
계			40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 학위증서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 ]과(전공)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

학위등록번호 : 숭의-○○○○○-○○○○○  
(송의-수여연도-일련번호)

\* 3년제 과는 과표시 다음에 “3년제”를 삽입하여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학위증서

성명 ○ ○ ○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전문학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숭의-학점-○○○○-○○○  
(송의-학점-수여연도-일련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수료증서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 ]과(전공) [ ]  
학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 학위증서

○ ○ ○  
○○○○년 ○○월○○일생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 ]학과의 전 과정을 이  
수하여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

학위등록번호 : 숭의-○○○○(학사)-○○○○  
(송의-수여연도(학사)-일련번호)